

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7525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현행법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개정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여,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 ·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
관련구성원

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김종수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